



6 주 가족 휴가



급여에 대한 걱정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DC에서는 유급 가족휴가(PFL)를 제공하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과 돈을 버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휴가는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최대 6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기존의 회사 혜택과는 별개로, DC 고용 서비스 부서(DOES)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추가 수 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가족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누가 가족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경우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 부모
- 배우자
- 조부모
- 형제자매

여기에는 위에 열거된 가족 중 생물학적인, 수양의, 의붓 및 일부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가족휴가 혜택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DC 유급 가족휴가는 DC 최저 임금의 1.5 배까지 버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최대 90%의 주당 대체 임금을 제공합니다. 주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000입니다. 혜택을 결정하기 위하여 DC 유급 가족휴가는 고용주가 지급하고 DC 고용 서비스 부서(DOES)에 보고된 과거 다섯(5) 분기의 소득을 사용합니다.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does.dc.gov/page/dc-paid-family-leave 를 방문해 보세요.

6

유료 가족
휴가 제공
6 주
가족 휴가의
돌봐
가족 구성원
심각한 건강
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주에게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혜택을 신청하려는 이유에 해당하는 일이 있기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유급 가족휴가 신청에 대해 알려야겠지만, 혜택 신청은 그 일이 발생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합니다.

PFL 혜택을 신청할 때, DOES 는 가족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이나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의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가 되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paidfamilyleave.dc.gov 를 방문하거나, (202) 899-3700 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아메리칸 잡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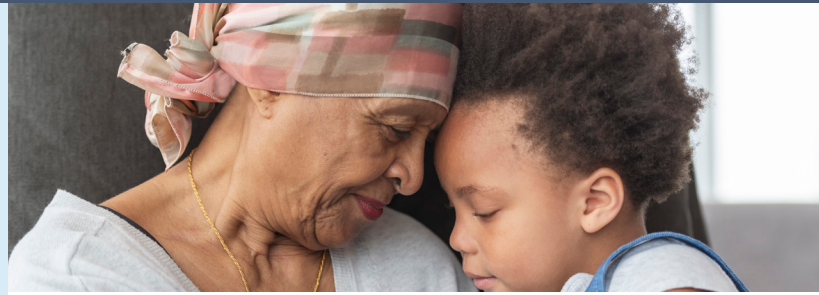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DC 유급 가족휴가 담당실에서 10 영업일 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을 위한 계획 세우기.

미리 계획하세요. 필요하기 전에 미리 유급 가족휴가에 관해 알아보세요.

- dcpaidfamilyleave.dc.gov 를 방문하세요.
- 연락 센터 (202) 899-3700 번으로 전화하세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청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 연중 여러 번 가족휴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연중 여러 번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년에 최대 총 8 주의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육아휴가 또는 병가 같은 여러 경우를 위한 혜택)의 일부로서 최대 6 주의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혜택을 받은 날짜에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달력상의 한 해가 아닙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다시 1 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Q: DC 유급 가족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내 일자리가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DC 유급 가족휴가는 일자리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 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같은 다른 법률들은 근로자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자리를 보호해 줍니다.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며 가능하고 적합한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 고용주는 유급 가족휴가를 제공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가족휴가혜택 과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과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고용주는 DC 유급 가족휴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 없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사용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을 수도있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과 DC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둘 다 동시에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dcpaidfamilyleave.dc.gov 를 방문하거나, 연락 센터 (202) 899- 3700 으로 연락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트위터: @DOES_DC, 페이스북: @DCDeptofEmploymentServices)!

